

일본 언론의 자율규제 노력과 인터넷 언론 현황

- 일본의 인권피해구제시스템 및 실명(實名)주의,
인터넷 언론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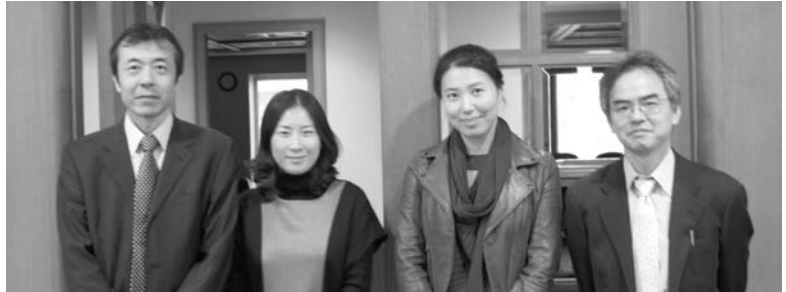
조사팀 이진아 / 기사심의팀 최은진

I. 들어가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올해로 창립 28주년을 맞이했다. 1981년 반론권으로부터 출발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중재’ 제도를 도입하고, 인터넷신문 및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도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가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해외 우수 언론사 및 유관기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병행해오며 시야를 넓혀왔지만, 유럽 및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의 보도문화 및 언론피해구제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올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단지 기사를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즉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그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부과한 데 반해,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의 인터넷 언론의 현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이번 연수를 통해 일본의 우수 언론사 및 유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일본 언론의 보도 문화와 각 언론사별 인권피해구제시스템을 파악하고, 언론 및 법학 전공 학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본 언론의 문화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일본신문협회를 방문한 연수자들. 왼쪽부터 토미타 메구미 편집제작부장,
기사심의팀 최은진 씨, 조사팀 이진아 씨, 타카기 쓰요시 편집제작부 편집담당주관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는 언론사와 관련 기관 방문 및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언론의 인권피해구제시스템, 사건보도의 실명주의 원칙, 인터넷 언론 현황 등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II. 자정노력을 위한 길, 제3자 기관

일본은 유럽의 언론평의회나 우리 위원회처럼 매체 전반을 아우르는 ‘횡단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에 의한 언론 통제를 경험했던 역사가 있어, 언론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그만큼 ‘표현의 자유’를 다른 가치보다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한다.

2000년대 들어 일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법안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홍역을 치렀다. 이 법안의 골자는 5천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기관이라면 단체의 성격을 불문하고 개인정보를 다룰 때 당사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며,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물론, 언론계까지 이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되자 이는 곧 법률

에 의한 언론통제라는 이유로 언론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언론계는 외부의 간섭을 막고 자정노력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제3자 기관’을 설치했다. 일본잡지협회 산하의 ‘잡지인권BOX’, NHK와 민간방송연맹이 출자해 설립한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 그리고 각 신문사 내부에 설치된 ‘제3자위원회’ 등이 그것으로, 모두 자율기관이다.

1) 각 신문사의 ‘제3자위원회’

국가가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의 취재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 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매체인 신문은 각 사 내부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제3자위원회’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아사히신문의 ‘보도와인권위원회’, 마이니치신문의 ‘열린신문위원회’, 교도통신의 ‘독자와인권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며, 대부분이 국가에 의한 언론개입 논란이 제기된 2000년 이후 설치되었다.

〈일본 주요 신문사 · 통신사의 제3자위원회 현황〉

2009. 5. 9. 현재
(일본신문협회 제공)

언론사명	명 칭	설치시기	목적 · 심의대상 · 역할 · 운영	위원 구성	회의 개최
아사히신문 (朝日新聞)	보도와인권위원회 (報道と人權委員會)	2001. 1. 1.	- 보도에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등의 인권문제가 발생한 경우 구제 도모 - 불만을 제기한 독자와 홍보실 사이에 해결이 어려운 경우나 위원이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경우회의 수시 개최 - 사장 직속의 전임 사무국장이 신청수리, 사전 조사, 심리진행 등을 담당	위 원 (3인, 임기 2년)	격 월
마이니치신문 (毎日新聞)	열린신문위원회 (開かれた新聞委員會)	2000. 10. 14.	- 보도에 의해 명예,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당사자의 고충 및 의견에 관한 내용과 본사 측의 대응을 위원들에게 제시 - 위원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진술하고, 신문보도를 검증 - 보도 관련 참고의견을 듣고 향후 보도에 반영 - 주필 직속의 전임 사무국장을 배치	위원 4인	연 3~4회
니혼게이지신문 (日本經濟新聞)	독자위원회 (讀者委員會)	2008.	- 지면전반에 관한 조언 등	3인 (명단 비공개)	연 2회
산케이신문 (産經新聞)	산케이신문보도검증위원회 (産經新聞報道檢正委員會)	2001. 7. 13.	- 보도 및 취재방법 적정성을 위해, 기사 및 취재에 관한 테마 및 보도 자세에 관해 조언 - 사장 직속 조직	사외위원 4인 사내위원 2인 등 총 6인	원칙적으로 연 2회
교도통신사 (共同通信社)	보도와독자위원회 (報道と讀者委員會)	2001. 6. 1.	- 독자의 의견이나 불만, 비판에 성의를 갖고 대응했는지, 취재나 보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독자에게 설명할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보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 진술 - 편집주간 직속의 기관으로 '보도와독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집국장을 위원장으로 둠	위원 3인, 임기 2년	원칙적으로 2개월에 1회
홋카이도신문 (北海道新聞)	독자와도신위원회 (讀者と道新委員會)	2001. 5. 1.	- 취재방식이나 기사 관련 독자의 고충 및 의견을 포함하여, 지나친 취재나 인권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 차별적인 표현 여부 등을 논의, 지면 관련 전반적인 의견 구함	사외위원 5인, 임기 1년	원칙적으로 연 3회
니시닛폰신문 (西日本新聞)	인권과보도 · 니시닛폰위원회 (人權と報道 · 西日本委員會)	2001. 5. 1.	- 보도 또는 취재에 의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인권문제가 발생한 경우, 심의 후 의견을 제시. 독자와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인권보도를 심화시키는 것을 지향 - 독자실에 제기된 고충 중 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의견 제시 - 특별히 심의가 필요 없는 경우, 인권 관련 보도테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의견을 향후 신문제작에 반영	새로운 위원 인선 중	연 수회 개최. 긴급심의사안 발생 시 임시회의 개최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2001년 1월 1일 ‘보도와 인권위원회(報道と人権委員会)’를 설치했다. 2009년 11월 현재, 법학 전공 대학교수, 변호사, 前 교도통신 논설부위원장 출신 등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임 위원의 추천을 받아 사무국에서 검토한 후, 각 분야별 중량급 인사로 선발하고 있다. ‘보도와인권위원회는’ 제3자위원회 중 드물게, 인권침해 관련 불만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심리를 개최하기도 하며, 기사로 인한 피해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및 편집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자(독자 및 언론사 측 관계자)에 대한 청취조사를 실시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모든 절차가 끝나기까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회 심리가 개최되며, 당사자들을 참석시키되 동석시키지는 않은 상태에서 질의응답을 거쳐 결론에 이른다. 이 때 인권문제와 관계가 있는 사안이라면 ‘견해’ 결정을, 무관한 사안이라면 ‘각하’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견해’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결정내용 및 결정이유 등을 신문에 기사화한다. 올해(2009년 11월 24일 현재)는 5건의 신청사건이 접수되어 ‘견해’ 2건, ‘각하’ 3건의 결정(2008년은 ‘견해’ 1건, ‘각하’ 2건)이 있었다. 신청 건수는 많지 않은 편이지만, 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내 규정이 있어 현재까지 편집국에서 위원회의 견해에 반대한 적은 없다고 한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2000년 10월 14일 일본 신문사들 중 최초로 ‘열린신문위원회(開かれた新聞委員会)’를 설치했다. ‘제3자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외부 시선에서 자사(自社) 보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되(현재는 학자, 변호사, 작가, 프리 저널리스트 등 5인으로 구성), 신문사가 선임한다.

회의는 매월 1회 열리는 ‘월례회의’와 위원 및 신

문사 관계자들 간 ‘좌담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월례회의’는 지난달에 발생한 중대한 사안을 주제로 선정해, 해당 주제에 관한 자사(自社) 기사, 해당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불만, 그리고 독자 불만에 대한 신문사의 대응 등에 관한 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우송하고, 각 위원들은 우송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정리한 의견을 신문사에 전달하면 신문사는 이를 신문사의 의견과 함께 ‘미디어’란에 보도한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각 위원들 간 의견교환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인권피해구제이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자사 신문의 보도 자세, 내용의 타당성 및 일본 사회 전반의 문제 등 그 밖의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등 광범위한 역할을 한다. 또 다른 회의인 ‘좌담회’는 ‘선거보도’ 또는 ‘일본의 재판원 제도’ 등과 같이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 주제를 선정해 자사 기사의 보도양태 및 제반 사안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갖는다.

두 가지 회의에서 다루지는 주제는 신문사 사무국이 선정하며, 주제에 대해 위원들의 반론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독자들의 불만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두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자들의 불만이 많이 접수된 사건일수록 중요한 이슈인 경우가 많아 독자들의 관심사안과 크게 어긋난 주제가 선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교도통신(共同通信)은 독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01년 6월 1일 ‘보도와독자위원회(報道と讀者委員会)’를 설치했다. 위원들은 위원회 사무국에서 선발하고, 전직 미디어 종사자,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여성의 시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성 위원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다. 회의는 보통 2개월에 한 번 개최되고 그 주제는 위원회 사무국에서 정한다. 회의 내용은 교도통신사와 가맹사들이 참여해 개설한 포털사이트인 <47NEWS(온



나나뉴스)>의 ‘보도와독자위원회’ 고정 코너에 게재한다.

한편 제3자위원회인 ‘보도와독자위원회’와 별도로 통신사 법무 부서에서 독자들의 불만을 접수, 인격권 침해를 당한 독자들에게 대해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금전 배상이 아닌 후속 보도를 통해 그 구제를 돕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보통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현재(2009년 11월 24일 기준) 교도통신사가 연루된 소송 건수는 1건에 불과하고 소송 이전 단계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통신’이라는 매체 특성상 가맹 신문사가 독자 불만에 대한 1차적인 해결을 하고 있어 교도통신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건수는 여타 신문사들에 비해 적다고 한다.

규슈지역의 유력 일간지인 **니시닛폰신문(西日本新聞)**은 인권침해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에 제대로 대처하고 외부의 제3자위원회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2001년 5월 1일 ‘인권과보도·니시닛폰위원회(人權と報道・西日本委員会)’를 출범시켰다. 현재 위원은 인권 전문 변호사, 법학 전공 대학교수(주로 형법·범죄법 분야), 일본의 재판제도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여성 인사 등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상기 표는 2009. 5. 9. 현재 기준). 다른 신문사와 마찬가지로 위원은 신문사가 선발하되, 인권침해 사안이 주로 사건보도에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특히 형법에 정통한 전문가 중에서 선발한다고 한다.

회의는 1년에 2~3회 정도 열리지만, 1년에 1회밖에 개최되지 않을 때도 있다. 회의는 기사에 대한 항의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는 논의가 있을 때 열리며, 회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신문사 내부에서 선정한다. 회의 내용은 회의 후 2~3일 내에 특집기사로 상세하게 보도하는데, 이는 독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선의 취재 기자들에게 위원회의 의견을 자세히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한다.

한편, 니시닛폰신문은 독자들의 의견 및 불만을 접수하는 별도의 ‘독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자 의견을 전사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독자실에서 접수한 모든 의견을 매주 신문사 내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정리해 모든 부서에 배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주 편집국 간부 회의에서 논의를 갖고 신문 제작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홋카이도신문(北海道新聞)은 2001년 5월 1일 ‘독자와도신위원회(讀者と道新委員会)’를 설치하고 변호사, 기업경영자, 법률 교수 등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자나 법률 관련 전문가 가운데 5인을 선임해 매년 3~4회 정도 회의를 열

고 있다. 회의 주제는 자사(自社)가 안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적 사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회의결과는 회의 다음 날 특집 기사로 한 페이지 전면에 걸쳐 게재되고, 해당 주제에 대한 각 위원들의 발언을 상세하게 싣는다. 또한 ‘독자와도신위원회’와 별도로 조직인 독자센터에서는 독자들의 불만이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발행부수 1,400만 부로 일본에서 최대 발행부수를 기록하고있는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별도의 제3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대신 인권침해 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매일 지면을 심사하는 ‘신문감사위원회(新聞監査委員會)’를 두고 있다. 원래 독자상담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었으나, 2005년 4월에 독자센터를 발족함에 따라 현재는 기사심사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신문감사위원회’는 신문사 사원 14명과 정년 퇴직한 사원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일 이뤄지는 심사결과는 「기사심사일보(記事審査日報)」에 정리하여 주 2회 발행하고 있지만 외부에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위원회의 역할은 규정상으로는 ‘신문지면의 객관성, 정확성 등의 심사를 수행하고, 지면내용의 충실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확성, 뉴스 가치판단, 내용의 과부족, 가독성, 인권 배려, 공정성, 다른 신문사와 겹치는 내용이 없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어, 인권침해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지면 전반에 관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문감사위원회’와 별도로 독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5년 4월 ‘독자센터(讀者センター)’를 출범시켰다. 독자센터 소속 직원만 40명으로 하루에 500여 건 이상의 독자 의견이 접수되고 있으며, 모든 의견은 자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기록되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공개한다. ‘신

문감사위원회’가 정형화된 기준에 따라 지면을 심사하는 것에 반해, 독자센터에서는 독자의 생생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어 취재부가 독자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다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5월 현재 일본신문협회 회원사 110개사 중 제3자위원회를 설치한 신문사는 40개사로, 지방의 군소 신문사를 제외한 중앙 일간지 및 각 지방 주요 일간지는 대부분 제3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율적 기구이지만, 국가에 의한 간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고 위원들을 모두 신문사 내부에서 자의적으로 선임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또한 제3자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대부분 신문사가 선정한 주제이다 보니,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주제를 원천적으로 제외시킨 후에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독자들의 불만 사항에 관한 것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사안이나, 특정 이슈에 관한 자사 보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관한 의견교환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직접적인 인권피해구제가 이뤄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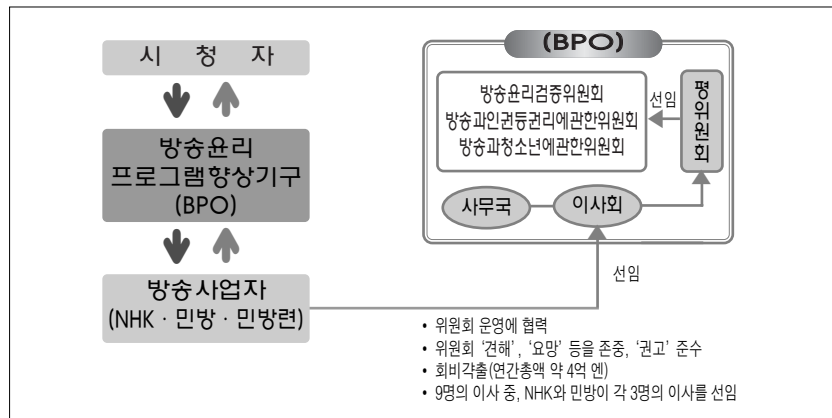
신문업계의 유일한 ‘횡단적 기구’인 일본신문협회가 ‘신문윤리강령’ 중 ‘인권의 존중’ 조항을 통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각 회원 신문사들로 하여금 이 강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 신문사 자체 가이드라인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협회가 개입할 권한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신문사 및 협회는, 각 신문사 내에 ‘기사(지면)심사위원회’를 두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인권침해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각사(各社)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문매체 전반을 아우르는 ‘횡단적 인권피해구제기구’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신문 업계의 ‘횡단적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학

계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BPO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도쿄대학(東京大學) 대학원 정보학환(情報學環) 하시모토 요시아키(橋元 良明)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한 ‘횡단적 기구’는 위험하다. 정치적 사안이라면 각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기 쉽고, 정치적 이슈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각 매체의 자율기관만으로 자정이 가능하다”며 각 매체의 자주·자율적인 노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의 ‘열린신문위원회(開かれた新聞委員會)’가 설치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치대학(上智大學) 신문학과 타지마 야스히코(田島 泰彦) 교수는 “각 국가와 사회에 적합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인권침해사안에 대해 개별 신문사들이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어 ‘횡단적 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일본의 경우 보도태도 및 가치관 등에 있어 각 신문사별 개성이 워낙 강해 ‘횡단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장래적으로 각 신문사들 제3자위원회의 개별적인 활동이 활발해지고, 각 신문사들의 제3자위원회 간 상호교류가 활발해진다면 ‘보도평의회’와 같은 기구 설치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통일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2) NHK와 민간방송연맹의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기구(BPO)」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roadcasting Ethics & Program Improvement Organization, 이하 'BPO')는 일본방송협회(이하 'NHK')와 사단법인 민간방송연맹(이하 '민방련')에 의해 설치된 방송계 자율설립 민간기구이다. BPO의 직접적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방송프로그램향상협의회'(방

송프로그램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 운영, 1969년 5월 설치)와 ‘방송과인권등권리에관한위원회기구’(BRO, 방송과인권등권리에관한위원회(BRC) 운영, 1997년 7월 설치)이며, 2003년 7월 1일 이 두 단체가 통합하여 BPO가 출범했다.

(1) 방송윤리검증위원회

방송윤리검증위원회는 2007년 1월 간사이TV 정보쇼프로그램인 「발굴! 아루아루 대사전」의 데이터 날조사건¹⁾에 따른 정부의 방송규제 움직임에 대하여 설치된 것으로, BPO 산하 3개 위원회 중 가장 최근에 설치되었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총무대신이 허위 방송을 한 방송사에 재발 방지계획 제출요구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NHK와 민간방송연맹(이하 민방련)은 2007년 5월 BPO 산하에 ‘방송윤리검증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방송국이 정한 프로그램기준이나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여 방송 윤리상 문제가 있는지를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위원회가 방송윤리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토의’ 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 (의견 공표)를 통해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한다.

허위·날조방송이라고 판단될 경우, 심리(‘견해’나 ‘권고’를 결정)를 진행한다. 2007년 위원회 설치 이후의 결정현황은 의견 5건, 견해 1건, 권고 1건이다.

최근 이뤄진 결정을 살펴보면, 2009년 3월 위원회는 2008년 11월 방송된 니혼TV의 보도프로그램 「진상보도 반키샤」의 오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니혼TV는 기후현이 토목공사 발주 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특집보도 했으나, 건설회사임원의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되어 2009년 3월 해당 프로그램에서 정정방송을 내보냈으며, 사장은 사임했다. 위원회에서는 허위방송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심리에 들어갔으며, 최초로 변호사와 연구자들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보에 이르게 된 과정을 밝히는 검증프로그램을 내보낼 것을 니혼TV 측에 권고하였다.

(2) 방송과인권등권리에관한위원회 (이하 ‘방송인권위원회’)

1993년 일본 사회에서는 TV아사히 보도국장의 정치적 공평발언 사건(츠바키 발언 사건)²⁾ 및 TBS의 사카모토 변호사 비디오테이프 사건(1995~1996년)³⁾ 등 방송에 관한 사회적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 1) 2007년 간사이TV 데이터 날조 사건은 후지TV 계열인 간사이TV의 정보쇼프로그램 「발굴! 아루아루 대사전2 (發掘! あるある大事典II)」에서 방송내용을 고의로 조작한 사건이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실험 결과 일본의 전통 콩 발효 식품인 낫또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방송하였으나, 이후 주간 아사히 취재에 의해 실제로 실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미국인 교수 인터뷰의 일본어 번역 부분을 날조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해당 방송국은 외부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여 날조라고 지적받은 7항목에 대해 15분간 정정방송을 내보내고, 기타 8건에 대해서도 연출상의 문제 등을 공식 인정했다.
- 2) 1993년 츠카비 발언 사건은 산케이 신문에 TV 아사히 보도국장 츠바키 씨가 비공식 석상에서 ‘총선보도에서 비자민당 정권이 탄생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보도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보도에서 TV아사히가 방송법상의 ‘정치적 공평’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국 이 사태는 국회청문회에서 츠카비 씨가 사죄하고, TV아사히는 우정성으로부터 ‘엄중 주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 3) 1996년 사카모토 변호사 비디오테이프 사건은 오오키타리교에 반대하던 사카모토 변호사의 인터뷰내용을 TBS 방송사 측이 오오키타리교 간부에게 보인 후 방영을 중지한 사건이다. 이후 사카모토 변호사 일가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에 오오키타리교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결국 해당 방송국의 최고 간부 등이 국회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사죄하는 한편, 우정성에 의한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다.



연수자들과 모토하시 하루키 BPO 사무국장(가운데)

방송규제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하에 ‘방송과인권등권리에관한위원회(BRC)’가 1997년 설치되었다. 방송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설치된 방송인권위원회는 현재 위원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만신청인과 방송국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에 한해 심리를 개최하고, 심리 결과는 ‘견해’나 ‘권고’ 등의 형태로 공표한다. 참고로, 1998년부터 30개 보도사안과 관련 39개 방송사에 대해 ‘견해’ 32건, ‘권고’ 7건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원회의 심리대상은 인권침해·방송윤리위반 사안, 방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방송국에 이의제기한 후 협의가 불성립된 사안, 인권침해의 당사자 및 직접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사안 등이다. 광고나 방송 전반에 관한 불만,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등은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신청자 및 방송국 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를 하며, 필요에 따라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한다. 심리 결과는 위원회 결정(‘견해’ 및 ‘권고’)으로 정리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해당 방송국에는 심리결과를 방송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위원회는 인권 일반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있으며, 고충 당사자와 해당 방송국의 중간 입장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중개·알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개·알선·심리대상 관련 고충 접수건수(2008년 79건)는 인권 일반에 대한 고충 접수건수(2008년 1,289건)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며, 이 중 실제로 BPO의 알선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거나(2008년 3건) 및 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실제 결정에 이르는 건수(2008년 4건) 또한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방송과청소년에관한위원회

(이하 ‘청소년위원회’)

2000년에 설치된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심의하는 등, 청소년이 시청하는 방송프로그램의 향상을 도모하는 위원회이며, 전문가 7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청소년위원회’는 지난 1997년 TV도쿄의 만화프로그램을 보던 다수의 어린이가 발작을 일으킨 ‘포켓몬 광감수성 발작사건’, 1998년 TV드라마를 모방하여 중학생이 교사를 살인한 ‘버터플라이나이프 살인사건’ 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

항에 대한 논란이 일자 ‘청소년과방송에관한조사연구회’의 제언을 바탕으로 2000년 4월 1일 프로그램 향상협의회 내에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시청자 의견을 심의한 뒤, 심의결과는 ‘견해’로 공표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방송국의 자주적인 검토를 요청한다. 시청자로부터 청소년에 관한 의견을 접수받은 건수는 2008년 한 해 동안만 1,498건에 이르지만, 청소년위원회 설치이후 요망, 견해, 제언 등을 발표한 건수는 2000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를 비롯하여, 2008년 아동의 성기를 비추는 사안에 관한 주의환기 등 10건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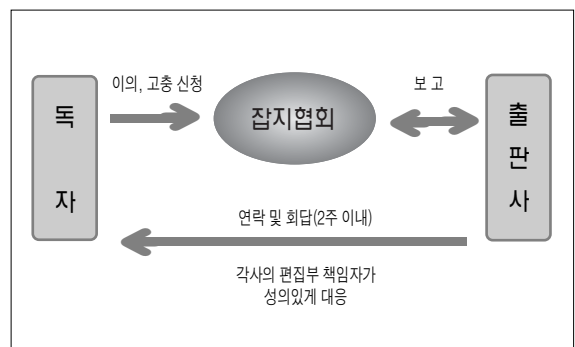
BPO 각 위원회의 최종적인 의견·견해·권고에 대해 각 방송국이 내용을 수정하여 방송하거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PO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 기구임에도 가맹 방송국이 각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의 없이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은 설립 당시 해당 위원회의 권한과 방송국의 협력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담보를 위해 개별적인 합의서를 교환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의 자율규제조차 준수하지 않는다면 외부로부터의 직접 규제를 피할 명분을 상실하고, 자발적으로 설립한 BPO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점을 방송업계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방송업계의 자발적 의지로 설립된 기구인 만큼 자율기구로서의 한계도 존재한다. BPO 모토하시 하루키(本橋 春紀) 사무국장은 BPO 설립 이후의 변화에 대해 “간단히 평가를 내리기 어렵지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송 프로그램상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 인권위원회의 4건의 결정 중 3건이 방송 윤리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즉, 방송윤리상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고 답

변했다. 또한 “BPO는 미국의 FCC처럼 제도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에까지 관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3) 일본잡지협회의 「잡지인권BOX」

일본 잡지 업계는 2002년 3월,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일반 개인의 인격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일본잡지협회 산하 ‘편집윤리위원회’ 내부에 ‘잡지인권BOX’를 설립했다. 사무국은 우편과 ‘잡지인권BOX’ 전용 팩스를 통해 독자의 피해구제신청(잡지명, 제목, 내용, 신청인 성명 및 연락처 등 기재)이 접수되면 해당 불만이 인권침해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접수된 문서를 해당 잡지사에 전달한다. 해당 잡지사는 그로부터 2주 안에 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잡지인권BOX’에 사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잡지인권BOX’는 독자의 민원사항에 대해 특별히 조사 업무는 하지 않으며, 독자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해당 매체가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독자와 해당 매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잡지인권BOX 처리시스템〉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잡지 매체의 선정성 등에 따



연수자들과 카츠미 료스케
일본잡지협회 사무국장(앞 줄 가운데)

른 지적이 빈번하지만 정작 ‘잡지인권BOX’에 접수되는 신청 건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2002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97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인권침해 관련 건수는 고작 7건에 불과한 실정이라 현재 ‘잡지인권BOX’는 인권침해 사안뿐만 아니라 독자의 모든 불만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 신청 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일본잡지협회 관계자는 “잡지에서 다루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저명인사, 유명인 등 공인에 관한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일반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건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잡지인권BOX’는 힘없는 일반 개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잡지사의 회신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지만, 신문업계가 횡단적 기구를 설치하려다가 실패한 것과 달리 잡지업계는 출판 미디어 중 유일하게 자율적 인권피해구제기관을 두고 있어 차별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독자와 잡지 사이를 물리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고, 중국적으로는 독자의 불만 사항을 해당 잡지사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여부를 판단할 만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인권피해구제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2002년 설립 이후 2009년 2월까지의 총 처리 건수가 97건에 지나지 않아 신청 건수가 미미한 실정인데다, 각 회원사에서 파견된 관계자가 잡지협회 산하의 각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회원사 간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제3자 기구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III. 사건보도는 실명(實名)보도가 원칙

2009년 11월,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바로 영국인 교사의 사체를 유기하고 도주한 이치하시(市橋) 용의자 관련 사건이다. 사건 발생 후 안면 성형수술을 감행해가면서까지 2년 7개월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이 사건에 대해 일본 매스컴들은 그의 성형 전후 얼굴 사진을 주요 뉴스로 내보내며 사건 내용, 사건 이후 그의 행적에 관한 상세 사항을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 언론에서는 이치하시 용의자처럼 공개수배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사기 용의자, 폭행 사건 피의자, 살인사건의 피

해자 등도 실명과 함께 얼굴 사진을 비롯한 구체적인 신상이 그대로 보도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범죄 피의자를 비롯한 피해자 등에 관한 사건보도에 있어 실명(實名)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연쇄살인사건이나 공인·유명인 관련 사건의 경우에만 피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실명보도를 하고, 범죄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과 크게 다른 점이다. 일본의 경우 기소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이 90%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실명주의 원칙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홋카이가쿠엔대학(北海學園大學) 법학부 한영학 교수는 “사건발생사실 확인 후 ‘피의자’라는 점을 명시해 실명을 함께 공표하면 ‘진실 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 범행을 저지른 자의 신원을 불특정할 경우 언론사가 일어나지 않은 범죄사실을 가공하여 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를 비롯한 모든 사항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피의자나 피해자에 관한 신상 역시 사건보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사건보도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라고 보는 인식이 강하다.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추정무죄의 이념’이 있지만 해당 범죄사건에 대한 경찰의 확인만 있다면 피의자의 반론권 및 사생활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일본 내 판례 동향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사건보도에 있어 피의자의 인격권보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보다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분위기이다.

물론 사건보도에 대해 일본신문협회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신문사마다 자체적으로 익명보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언론사가 사건보도에 있어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하되, 소년법에 따라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

우, 향후 재판에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결될 소지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및 성폭력범죄사건 피해자, 매우 경미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익명보도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자사(自社)가 발행한 「사건 취재와 보도(事件の取材と報道)」에서 실명주의 원칙에 대해 아래와 같은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는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뉴스의 기본원칙으로서의 5W1H가 빠질 수 없다. 사회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자가 ‘누구’인가, 용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인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다. 사건 보도 또한 매일매일의 역사적 기록으로서 5W1H 중 어느 하나가 빠지면 충분한 기록이 되지 않는다.

▶ 실명보도는 사람의 안부에 관한 정보를 널리 사회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이나 지진 및 태풍과 같은 재해의 경우,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강한 관심사가 된다.

▶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숨기거나 잘못 처리하고 있지 않은지를 체크하는 것은 보도기관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실명 보도를 함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 정보감시가 용이해진다. 실명보도를 통해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증언하는 사람이 나선다든지 반대로 범행을 입증할 목격자가 나선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1982년 「쓰여지는 입장, 쓰는 입장(書かれる立場, 書く立場)」을 처음 발행한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기사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1989년부터 피의자의 실명 뒤에 ‘용의자’ 표기를 함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08년 「사건·사고취재보도지침(事件・事故取材報道指針)」(대외비)을 마련해 범죄사건의 경중 및 피의자의 신분 등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실명 및 익명보도의 기준을 정립하고, 피의자의 신원을 공표할 때 주소 공개 수준, 피의자에 대한 호칭 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사 작성 시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실명보도원칙에 대해 일본 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건보도의 실명주의가 ‘추정무죄의 이념’에 반하고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學)미디어학과 아사노 겐이치(淺野 健一) 교수는 “기소된 피고인 중 유죄 판결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체포된 용의자가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30%에 이르고 있어, 사건보도가 주로 체포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 대한 보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의자의 실명을 내보내면서 ‘용의자’라는 표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해도 된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IV. 포털사이트에 대항하기 위한 기준 언론사들의 상호연대

일본 사회는 다른 매체보다 신문의 신뢰도가 막강하다. 이처럼 높은 신뢰도는 신문 구독으로 이어져 신문사 전체 수익 중 구독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육박한다고 한다. 따라서 신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뉴스를 제공하면서 얻는 제반 수익이 1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기존 매체의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인터넷에만 기반을 둔 독립형 인터넷신문이 뿌리내리기에 척박한 환경이라 <오마이뉴스재팬>이나 <잔잔(JanJan)> 등 독립형 인터넷신문은 아직 결음마 단계이다.

일본의 신문사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이하 “언론사닷컴”이라 한다), 그 양태가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의 ‘언론사닷컴’이 지면에 게재된 모든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함과 동시에 인터넷에만 기사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뉴스 서비스의 비중이 큰 반면, 일본의 경우는 철저히 ‘지면 중심’으로, 지

면에 게재된 기사 중 해설 기사를 제외한 스트레이트 기사만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특집 기사나 특종 기사는 경쟁사를 의식해 신문 배달이 완료될 시점에 임박해서야 웹에 게재하는 신문사가 많고, 자사 홈페이지인데도 기사 전문을 게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인터넷을 지면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일본 역시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기존 언론사들은 이를 견제하기 위한 타개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포털사이트는 <야후>로, 수많은 언론사들과 기사제휴계약을 맺고 다양한 기사를 매개하고 있다. 아직까지 신문업계의 광고 수익 감소가 인터넷 언론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된 적은 없지만, 젊은 독자들이 점차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기존 언론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점은 일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들이 상호 연대하여 그들만의 자체 포털사이트를 개설한 것이다.

판매부수, 정치 성향 등의 측면에서 라이벌 관계에 있던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니혼게이지신문(日本經濟新聞),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등 3개사는 2008년 1월 31일부터 공동 뉴스 포털사이트인 <新's(아라타니스)>서비스를 시작했다. 세 신문사의 1면 및 사회면의 뉴스 기사, 사설, 칼럼 등의 표제나 본문 일부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동시에 게재하고 있어 각 신문사의 논조를 비교하며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는 기사 전문을 게재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각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뉴스 안내인' 코너를

신설해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 저명인사의 칼럼을 게재하는 등 인터넷 유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지신문이 야후에 대한 기사제공을 중지한 데 반해, 요미우리신문은 기사 글자 수를 200자로 축약한 형태로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新's> 서비스 개시에도 불구하고 <야후>에 대한 기사 제공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요미우리신문 관계자는 "포털사이트를 통하지 않고도 3사의 기사를 열람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에서 <新's>를 출범시켰지만 아직까지 실험적 단계이고, 현실적으로 야후를 통한 열람자가 많다"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이 뿐만 아니라, 교도통신(共同通信)도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에 대항함과 동시에 교도통신과 각 가맹사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일본 47도 도부현에 있는 지역일간지 53개 가맹사와 함께 2008년 1월부터 종합 신문사이트인 <47NEWS(은나나뉴스)> 서비스를 개시했다. 전문 편집자가 각 지방지 사이트를 방문해 기사를 선별·게재하고 있으며, <新's>와 마찬가지로 요약된 형태로 기사를 제공하고 있어 전문을 읽기 위해서는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연결돼 있다. <47NEWS> 출범 이후의 변화에 대해, 가맹사인 니시닛폰신문(西日本新聞)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페이지뷰(P/V)가 증가해, 인터넷을 통한 지역특산물의 판매수익이 크게 늘고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포털사이트 대항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갈수록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포털사이트에 대항하기 위해 기존 언론사들이 야심차게 자체 포털사이트를 개설했지만 성과는 아직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나고야대학(名古屋大



교도통신과 지역일간지 53개 가맹사가 함께 운영 중인 종합신문사이트 <47NEWS>

學) 김상미 교수는 “인터넷 유저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부수적 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비교해서 읽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지 않다. 따라서 <新>s>와 <47NEWS>의 접근 방식이 빗나간 것 같다”고 평가한 뒤, “<야후>의 경우 전직 미디어 종사자 10인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해 메인 페이지에 제공하는 ‘토픽스(トピックス)’ 섹션이 성공적으로 서

비스되고 있고, 중앙뉴스뿐만 아니라 지역

뉴스도 충실히 전달하고 있어 당분간 포털사이트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V. 마치며

일본 언론은 태평양 전쟁 당시 국가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때문에 국가에 의한 언론 개입 논의가 부상할 때마다 극렬히 반발해왔고, 국가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신문 및 잡지, 방송 등 각 매체들은 ‘제3자위원회’ 및 ‘잡지 인권BOX’, ‘BPO’ 등을 설치해 언론사 내부의 자율규제가 성공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또한 사건보도 시 경찰이 제공한 신원정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해 실명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과, 포털사이트의 강력한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 언론사들이 연대하여 자체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면 기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역시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는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바로 ‘다름’이었다. 자율기구에 의한 자발적 규제 또는 외부기구에 의한 타율적 규제, 사건보도 시의 실명보도 또는 익명보도, 기존 언론사의 포털 사이트와의 견제 또는 협조, 오프라인 중심의 언론 문화 또는 온라인 중심

의 언론 문화, 이 중 그 어떤 것도 정답일 수 없고 상호 간의 우열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번 연수기간동안 각 언론사 및 방문기관을 상대로 우리 위원회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대학원 수업에도 참여하는 등 일본에서는 생소한 제도인 우리 위원회를 알리는 데에도 적지 않은 비중을 뒀다. 또한 방문기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에도 우리의 인권

피해구제제도 및 인터넷 언론 현황 등이 우월하다는 인상을 풍기지 않고, 각국의 제도적·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주력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번 연수가 양국의 언론 문화와 제도의 ‘다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여러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